

카드뉴스로 넘겨보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쇼미더
 디지털윤리**

카드뉴스로 넘겨보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쇼미더디지털윤리  방송통신위원회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카드뉴스로 넘겨보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쇼미더
 디지털윤리**



 방송통신위원회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기획·총괄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사윤리팀

- 본 저작물의 무단전재나 복제, 변경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가공·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저작물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저작물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blog.naver.com/kcc1335)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아인세.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PART 1

디지털윤리
체크리스트

PART 2

저작권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지식

- ❶ 저작권 넌 누구냐? 014
- ❷ 저작인격권은 또 뭐지? 018
- ❸ 저작재산권은 또 뭘까? 022
- ❹ 저작권도 보호기간이 있다고? 028
- ❺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032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 ❶ 커버송과 커버댄스의 저작권 036
- ❷ 캐릭터의 저작권 040
- ❸ 음원의 저작권 044
- ❹ 인터넷 기사의 저작권 050
- ❺ 저작물의 출처표시 054
- ❻ CCL의 이용허락 표시방법 060
- 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066
- ❽ 재편집한 동영상의 저작권 072
- ❾ 저작법에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078
- ❿ 동물이 나오는 콘텐츠의 저작권 084
- ⓫ 저작권 침해신고를 받은 저작물 대처방법 088

PART 3

인격권

크리에이터가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권!

- ❶ 인격권이란? 094
- ❷ 명예훼손이란? 098
- ❸ 개인정보침해란? 104
- ❹ 초상권이란? 108

Q&A로 알아보는 인격권

- ❶ 댓글로 당한 명예훼손 해결방법 112
- ❷ 일부 가려진 정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118
- ❸ 라이브방송과 초상권 124
- ❹ 가족의 초상권 130

PART 4

유해콘텐츠

디지털 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 ❶ 허위정보 138
- ❷ 청소년 유해매체물 142
- ❸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148
- ❹ 유해한 콘텐츠 156
- ❺ 1인 미디어 동영상의 시청 등급 기준 162
- ❻ 조작된 영상 168
- ❼ 몰카 콘텐츠 174

PART 5

광고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광고윤리

- ❶ 허위 광고의 유혹 ① 180
- ❷ 허위 광고의 유혹 ② 188
- ❸ '내돈내산' 콘텐츠 주의사항 196
- ❹ 뒷광고 표기방법 202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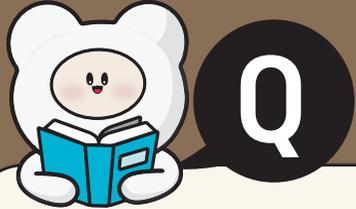
PART 1

디지털윤리
체크리스트



PART1 디지털윤리 체크리스트

들어가기 앞서



디지털윤리 체크리스트

디지털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전 체크해 보아요!



당신의 콘텐츠는 '안녕'한가 YO!

- 1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포함된 이미지, 글꼴, 음원, 안무, 캐릭터, 언론 기사 등은 원저작자의 사용 동의를 받았나요?

네 아니오
- 2 명예훼손**
특정인이나 단체 등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혹은 거짓정보를 포함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 3 개인정보 침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재산, 학력, 병력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 4 초상권 침해**
동의를 받지 않은 특정인의 얼굴, 신체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영상을 포함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콘텐츠 제작 전 체크해 YO!

5 혐오 표현

특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모욕이나 혐오 발언,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논란이나 편향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6 가짜뉴스

어떤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뉴스처럼 꾸며서 발표하고 있나요?
또는 그런 가짜뉴스를 인용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7 폭력적·선정적·위험한 콘텐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폭력적·선정적인 내용,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고 있나요?
특히 어린이나 동물을 자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학대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세상 YO!

8 콘텐츠 조작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콘텐츠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가공한 내용을 포함시켰나요?

네 아니오

9 광고

소정의 대가를 받은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했나요?
그리고 홍보하는 내용이 실제 경험에 근거하고 있나요?

네 아니오

10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가 개인, 공익,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게 책임을 다해 제작되었나요?

네 아니오

PART 2

저작권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지식

- ❶ 저작권 넌 누구냐?
- ❷ 저작인격권은 또 뭐지?
- ❸ 저작재산권은 또 뭘까?
- ❹ 저작권도 보호기간이 있다고?
- ❺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 ❶ 커버송과 커버댄스의 저작권
- ❷ 캐릭터의 저작권
- ❸ 음원의 저작권
- ❹ 인터넷 기사의 저작권
- ❺ 저작물의 출처표시
- ❻ CCL의 이용허락 표시방법
- 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❽ 재편집한 동영상의 저작권
- ❾ 저작권법에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 ❿ 동물이 나오는 콘텐츠의 저작권
- ⓫ 저작권 침해신고를 받은 저작물 대처방법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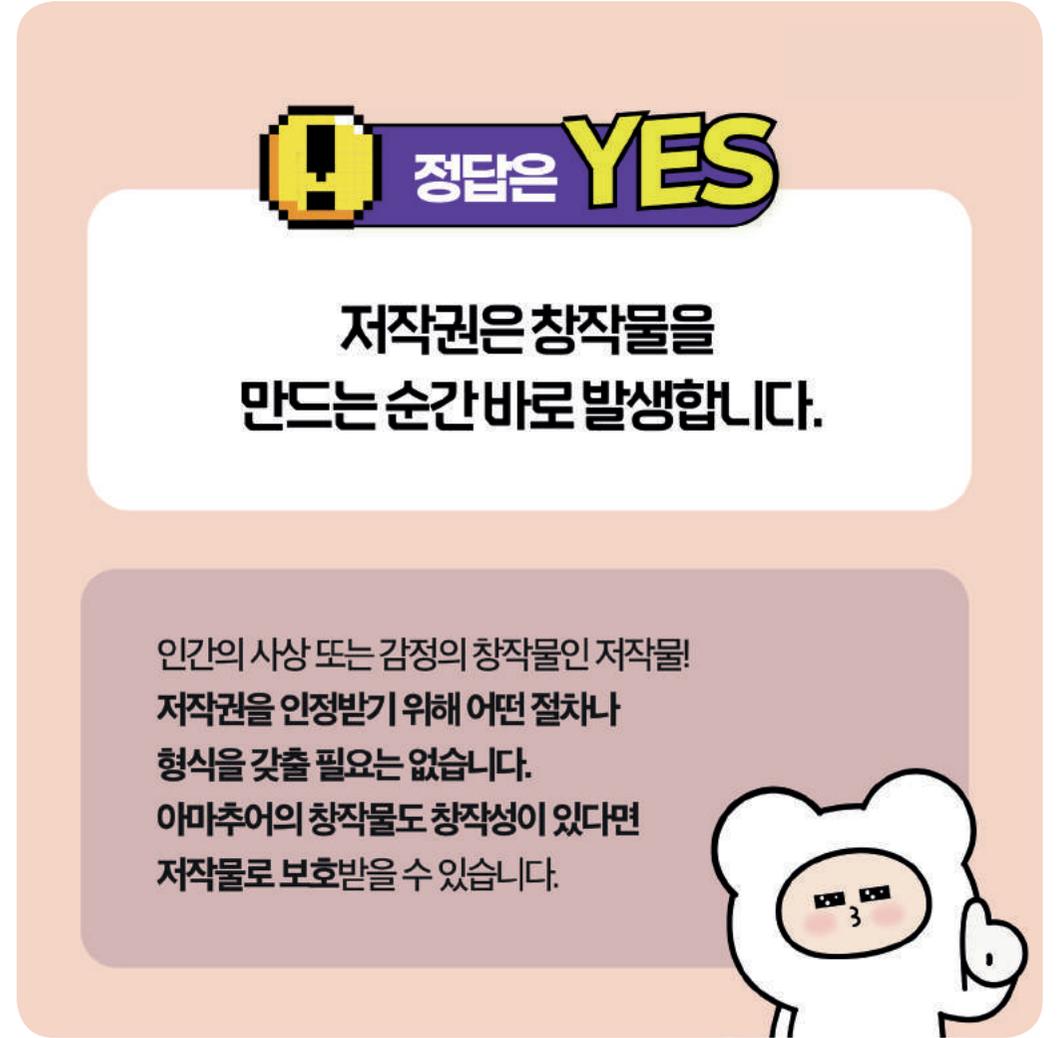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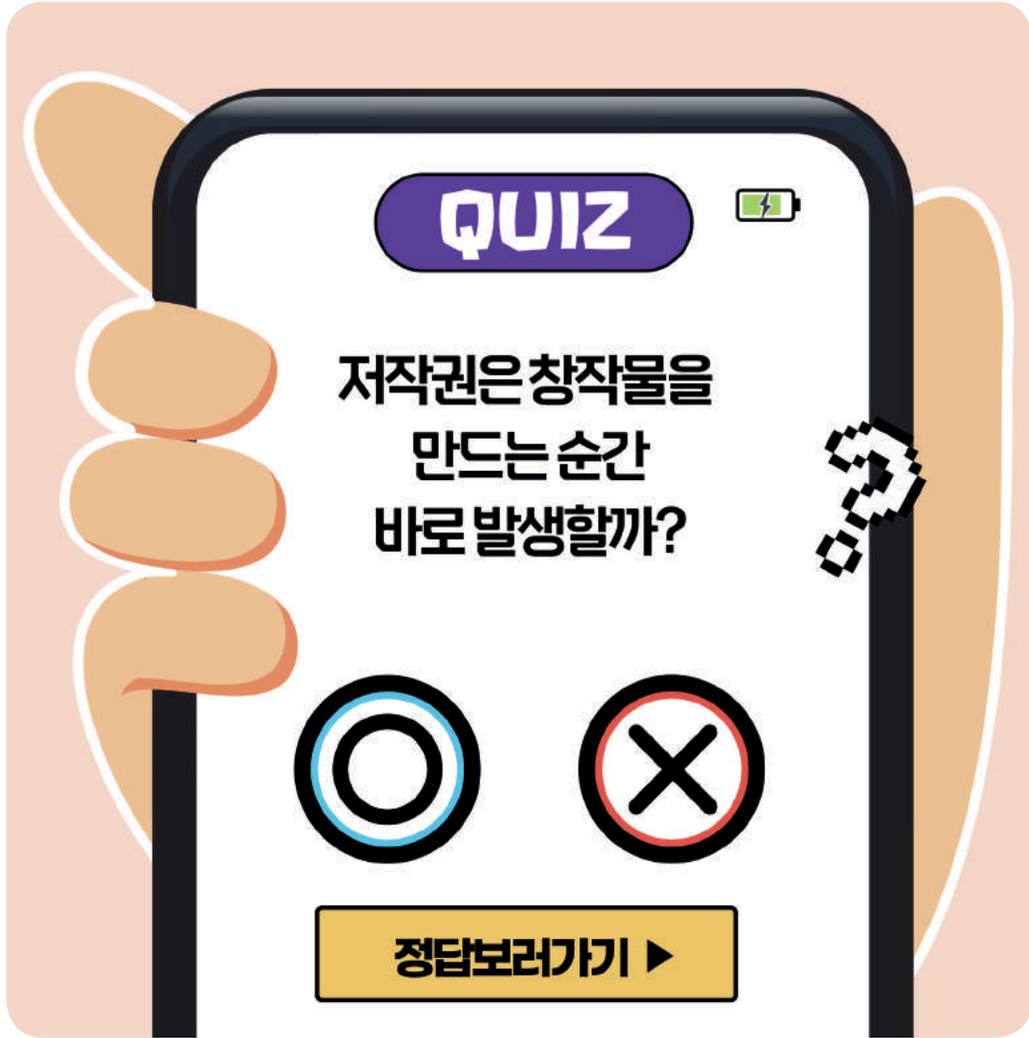
① 저작권 넌 누구냐?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저작자의 권리와 창작자의 가치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 저작물의 다양한 형태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지식



② 저작인격권은 또 뭐지?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3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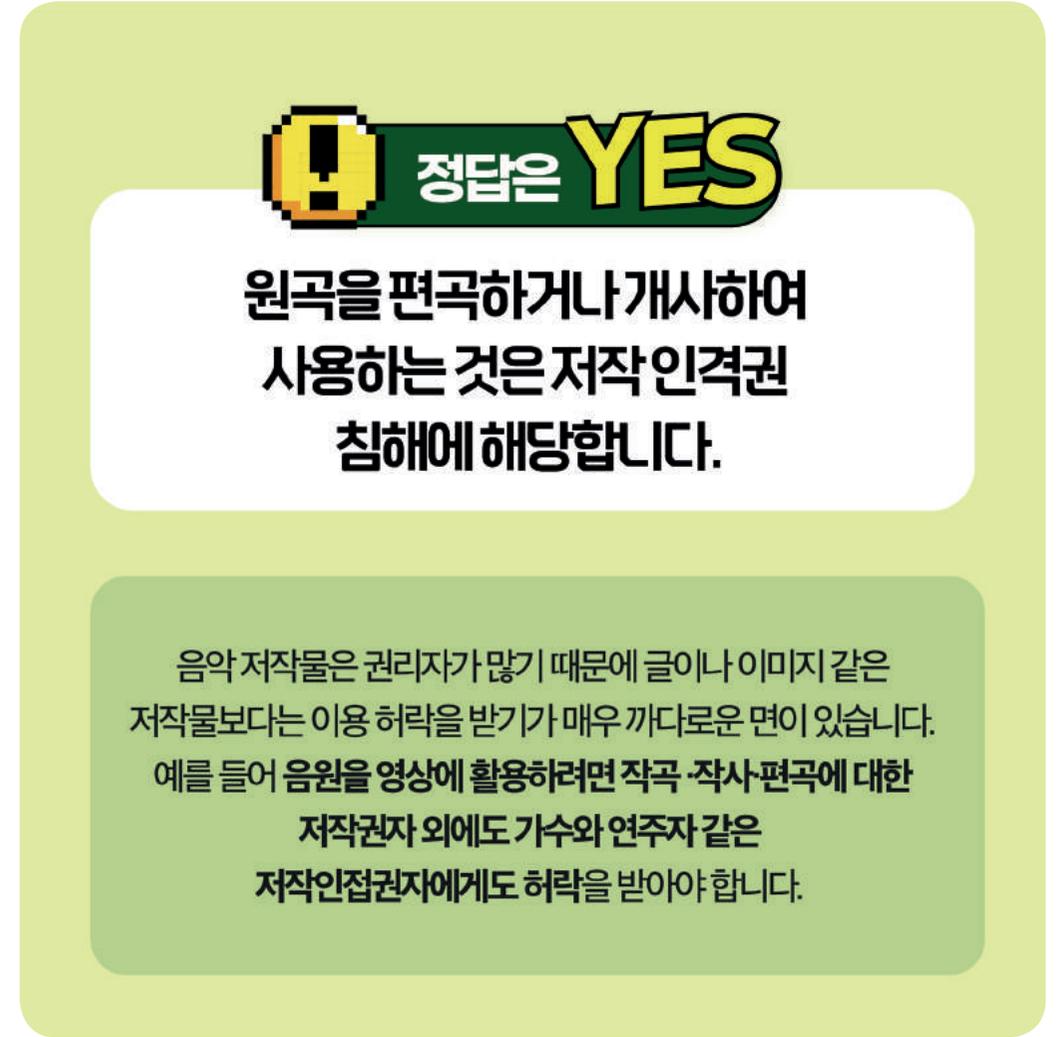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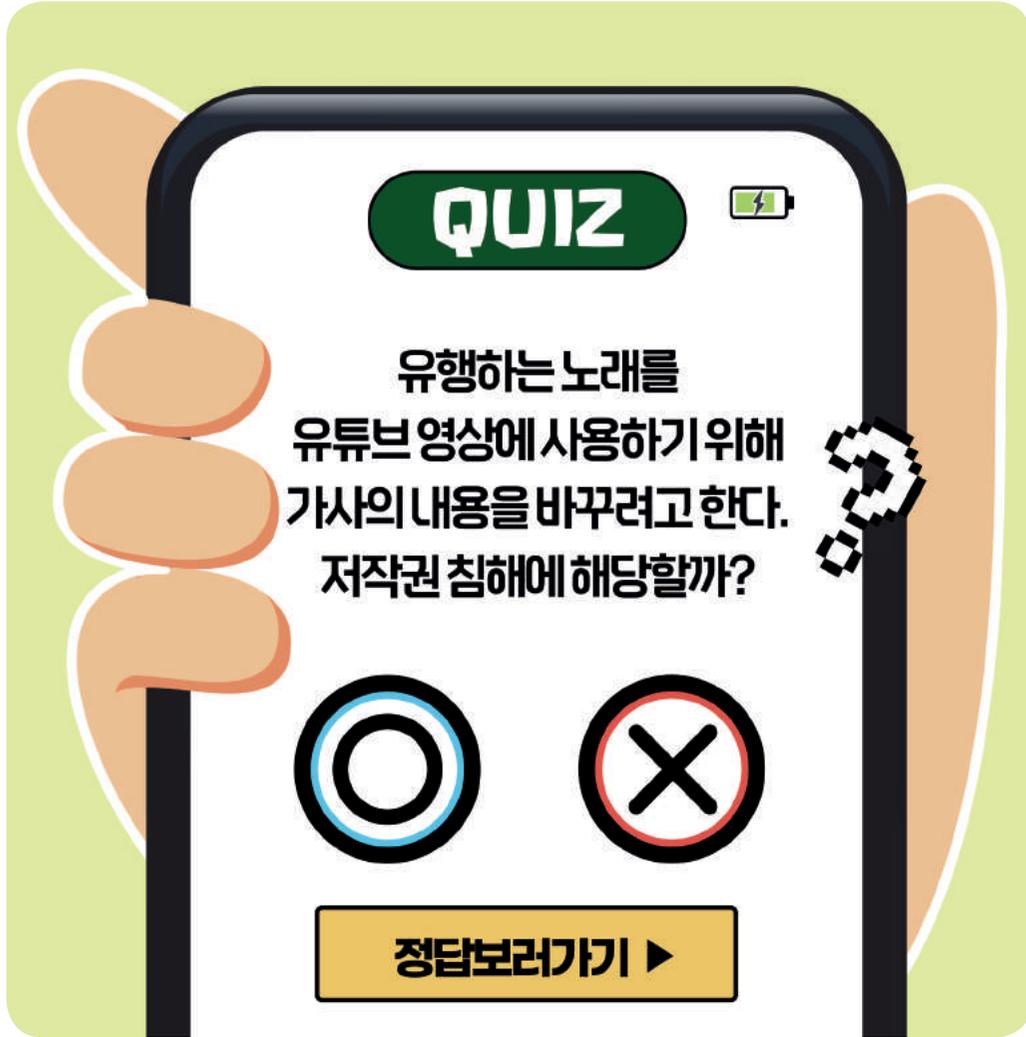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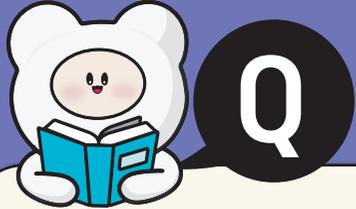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이름
(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권리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지식



③ 저작권은 또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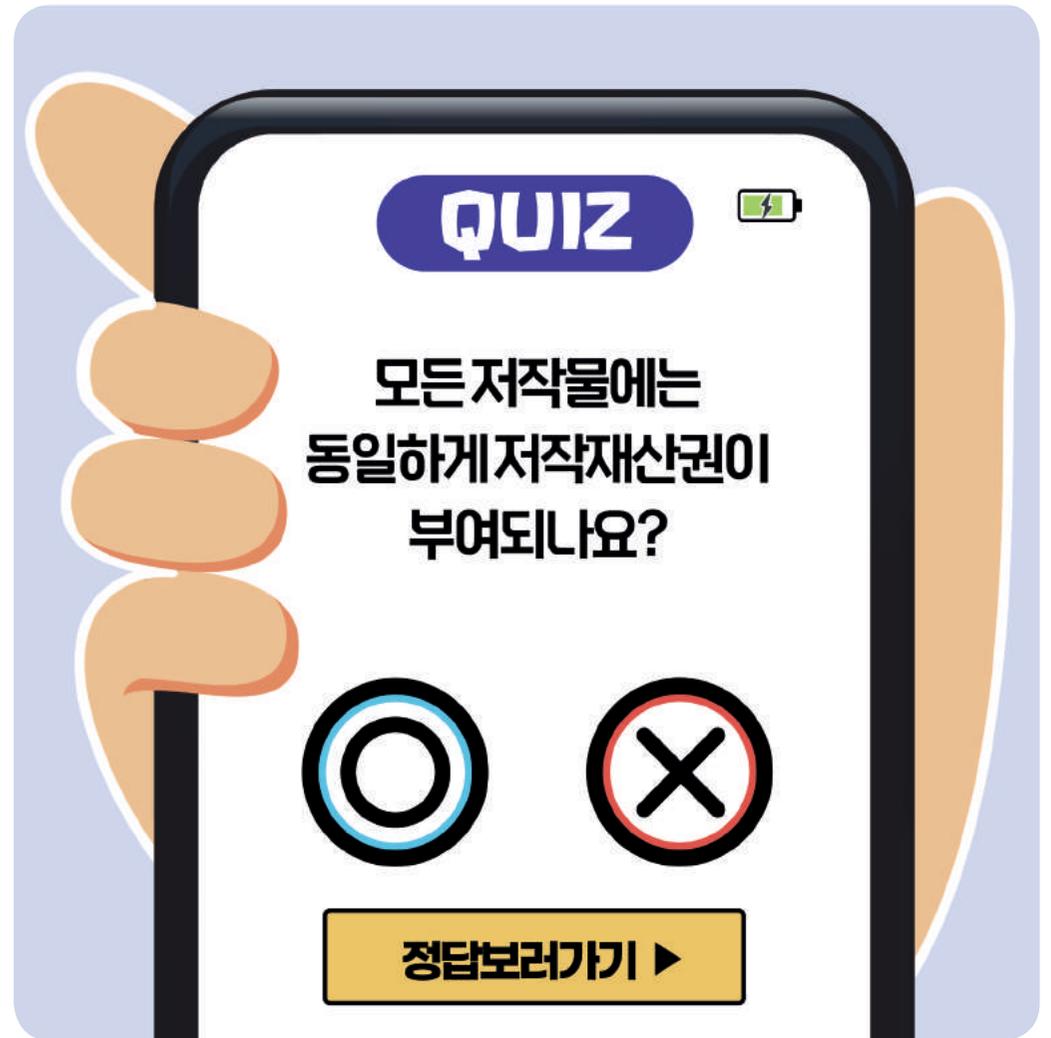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로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ote **저작권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재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공중송신권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전시권	미술·사진 및 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품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대여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다만, 대여권은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사용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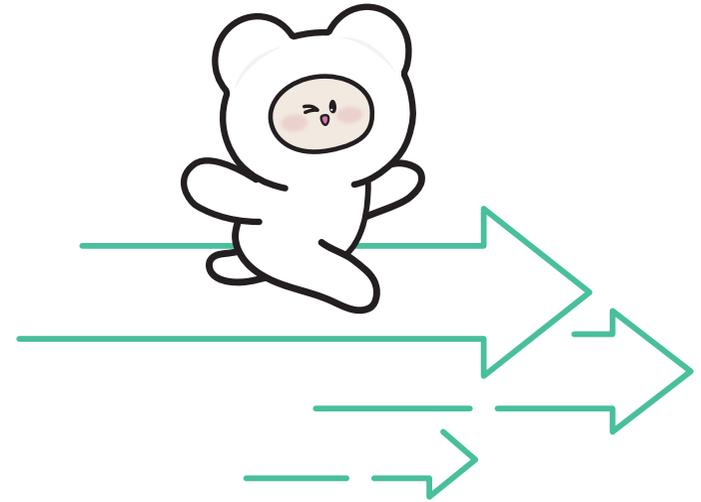
정답은 YES

모든 저작물에는 동일하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저작권은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보다 전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여 더욱 강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저작인격권도 동일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위원회 '꼭꼭 저작권: 권리자편' 참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지식



4 저작권도 보호기간이
있다고?

? 저작권자의 보호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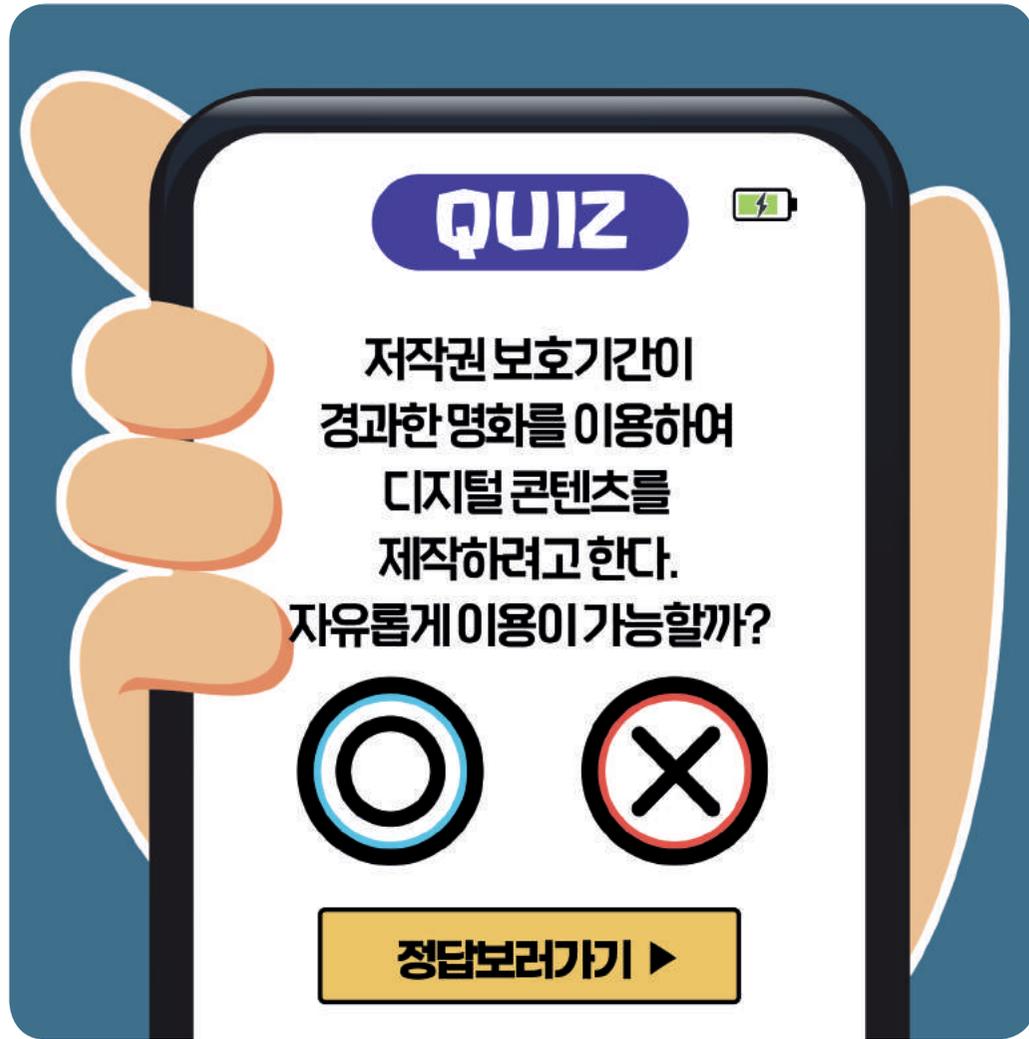
- 원칙**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명이란 아호, 예명 등 실명 이외의 호칭을 뜻합니다.

- 업무상 저작물** 공표된 때부터 70년

- 영상저작물** 공표된 때부터 70년

- 공동저작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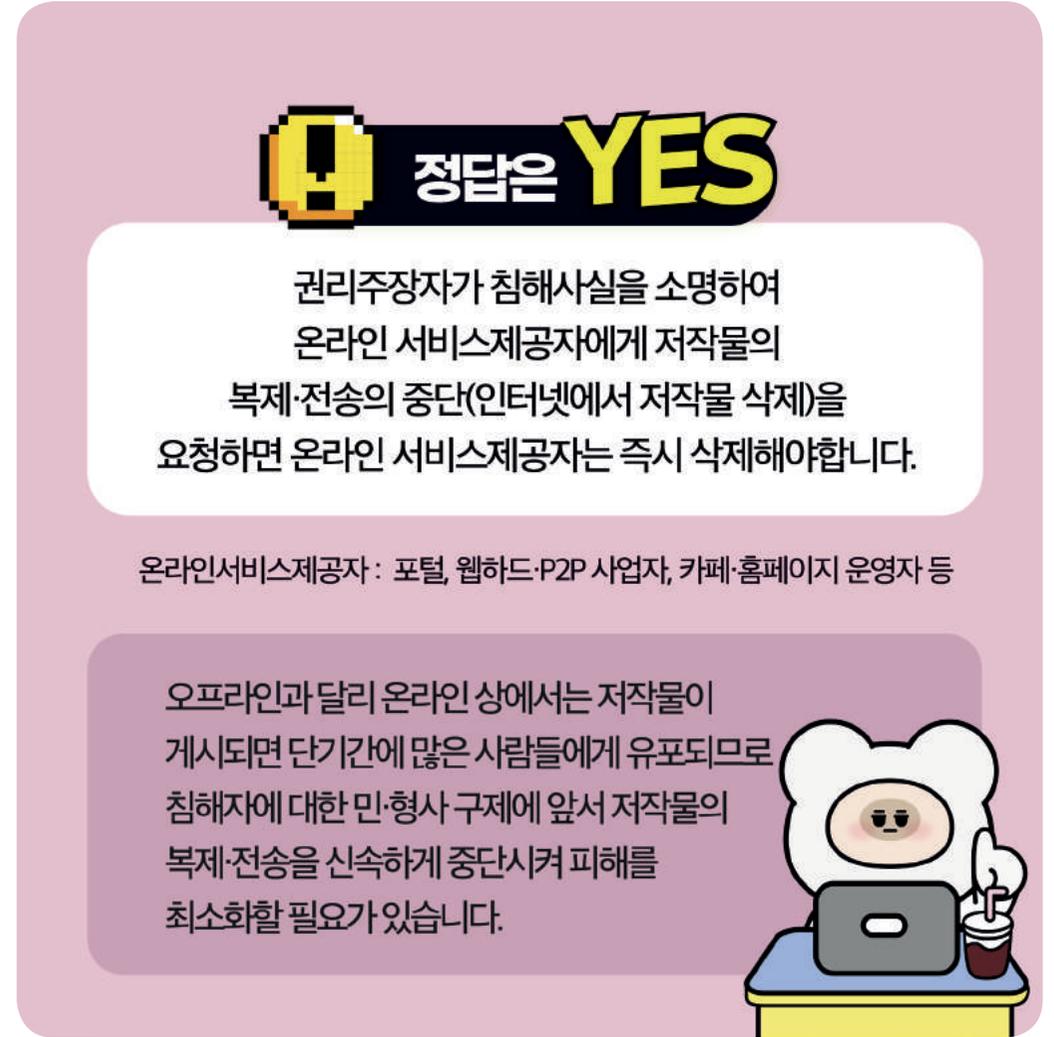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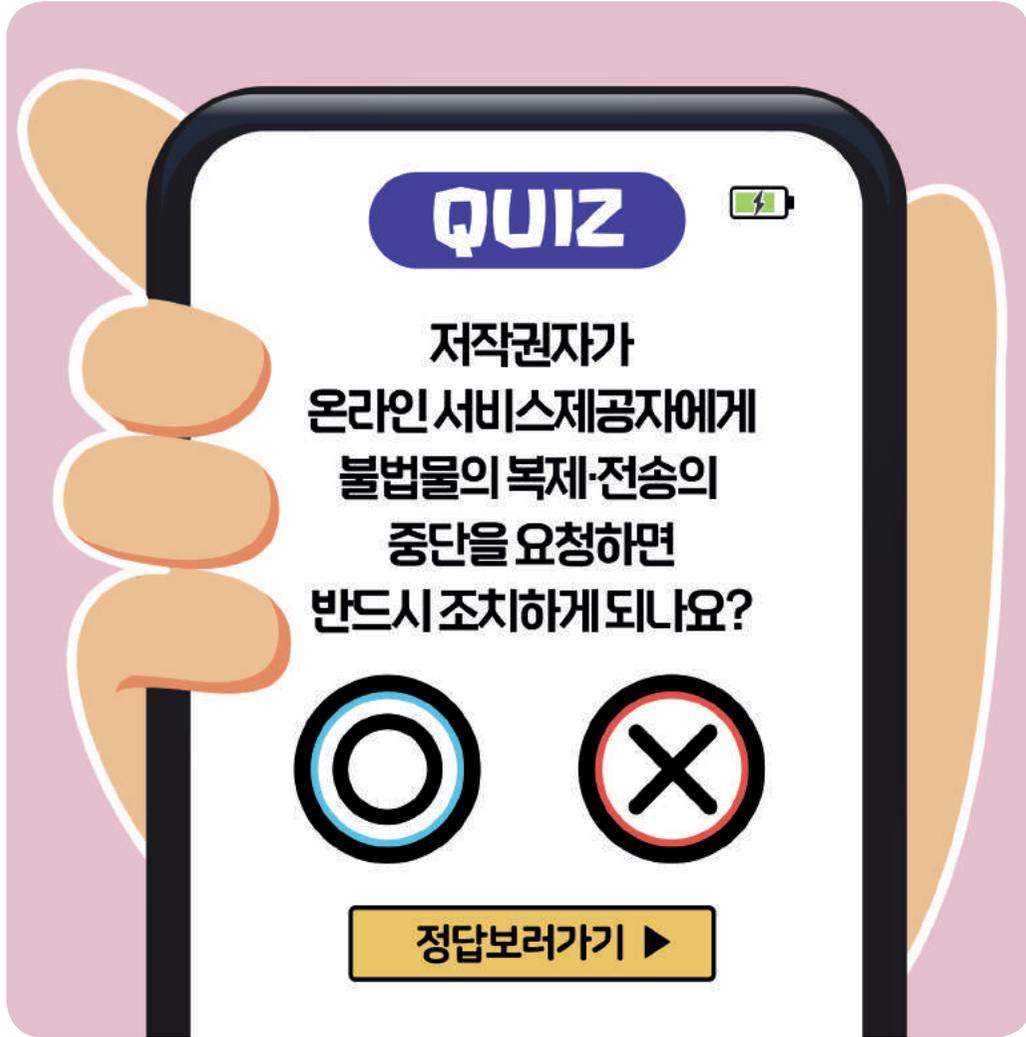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지식



5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 1 **저작권 침해자에게 연락**
침해자에게 연락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 2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요청**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삭제 (복제 및 전송의 신속한 중단) 요청가능
- 3 **법원에 민사적인 구제청구**
삭제 요청과 별도로 법원에 민사적인 구제 청구 가능
- 4 **수사기관에 형사처벌 요구**
민사적인 구제와 별도로 형사고소 가능
- 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는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침해자가 이에 응하면 조정절차 진행가능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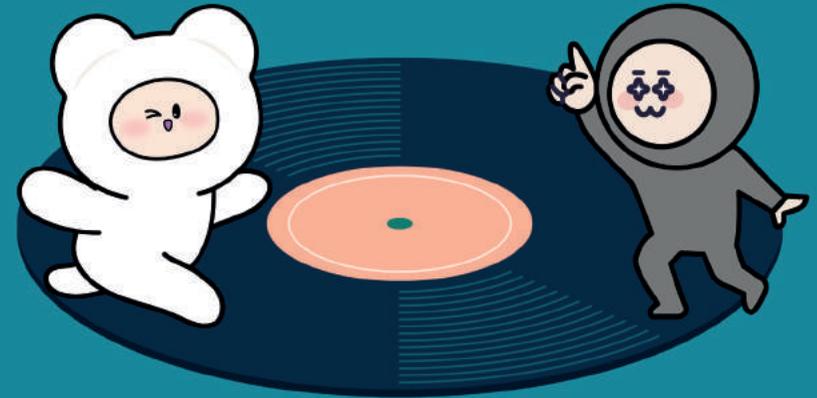
유행하는 커버송, 커버댄스는
상업적 목적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게시해도 된다고요?

커버(Cover)란 이미 발표된 노래나 댄스 등의 저작물을 다시 연주하거나 재녹음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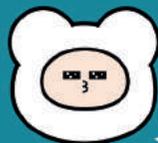
NO

커버송, 커버댄스라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악 MR을 사용하거나 노래, 안무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편곡은 2차적 저작권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영상 플랫폼 등에 업로드한다면
전송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커버송, 커버댄스를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커버 영상과 같이 노래 대부분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삽입되는 편집 영상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안무역시 창작자의 고유한 저작물입니다.
안무는 가수나 댄서들에게 적합하게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고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안무기의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음악저작물은 권리자가 많기 때문에
글이나 이미지 같은 저작물보다는
이용 허락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원을 영상에 활용하려면
작곡·작사·편곡에 대한 저작권자 외에도
가수와 연주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서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알쓸정보

각 플랫폼에서는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플랫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경우는 ①저작권 정보제공, ②무료 음원 소개,
③음원 교체 틀 제공 등을 통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누구나 알고 있는
‘펍수 캐릭터’!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다구요?

NO

만화, TV 프로그램 등의 캐릭터나 이미지는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인기 캐릭터들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캐릭터는 물론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따라 만화, 영화와 같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큼니다.



아래의 경우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를 유튜브 게시를 위한 동영상에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와 동일한 모양의 인형을 제작하거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와 같은 또는 해당 캐릭터의 독특한 개성 (Identity)이 드러날 정도로 유사하게 그려서 이용하는 경우

유명하지 않은 캐릭터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면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알쓸정보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고 “**사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면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함

자료 : 최진원, '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30초 미만의 짧은 음원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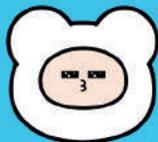
NO

30초 미만의 짧은 음원 역시
무단이용시에는 이용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문제 없이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또는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없는 음악,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음악을 찾아 사용해야 해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뭘까요?



저작권법상 음악 저작물 (저작권법 제 3조 1항 제 2호)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 저작자를 저작권자로 그리고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음악제작자(기획사)를 저작인접권자로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 저작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

저작인접권자

실연자(저작물 등을 연주·가창·낭독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로, 연출·지휘·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 (음반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

그러므로 발매된 음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리자로부터 모두 이용허락을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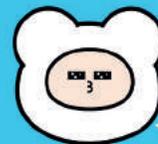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가 있나요?



다양한 권리자로부터 매번 허락을 받기가 어려우니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신탁관리 단체가 존재합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대표적이며 각 협회의 홈페이지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를 통한다면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료로 배포한 음악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구요?

저작권은 권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지났거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료로 배포한 음악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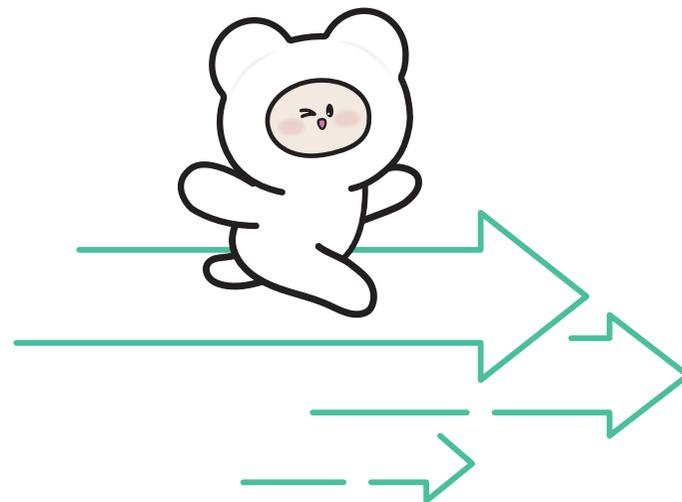


무료음원 서비스 제공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 페이스북 사운드 컬렉션
BGMstore Bensound Freesound(효과음) MEWPOT
MotionElements FreeMusic Archive Incompetech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index.do>

이러한 업체들을 통해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 약관을 잘 읽어보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인터넷방송에서
공익을 위해 인터넷 기사를
읽어주는 것은 관철을까요?

NO

인터넷 기사는 예외적으로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닌 이상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영리 혹은 비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사 또는 기사가 작성한 기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언론사 혹은 기자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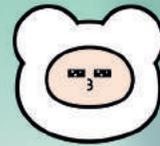
저작권재산권 중 어떤 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허락 없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그리고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제 7조 제 5호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세, 일기 예보, 인사부고 등의
기사는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요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무료음악이나 이미지도
자막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구요?

YES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평소 원작자나 실연자의 성명을 콘텐츠에 자막등으로
표시하는 습관을 갖고, 저작물에 출처 표시 의무마크가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해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아호, 예명 등
실명 이외의 호칭)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
이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 표시 방법

공공누리 저작물은 1유형  부터
4유형  까지 존재하는데, 어떤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마크가 붙어 있다면 출처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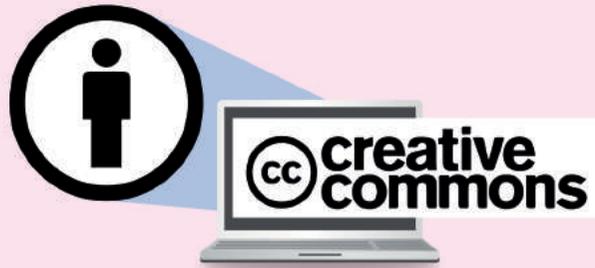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 문구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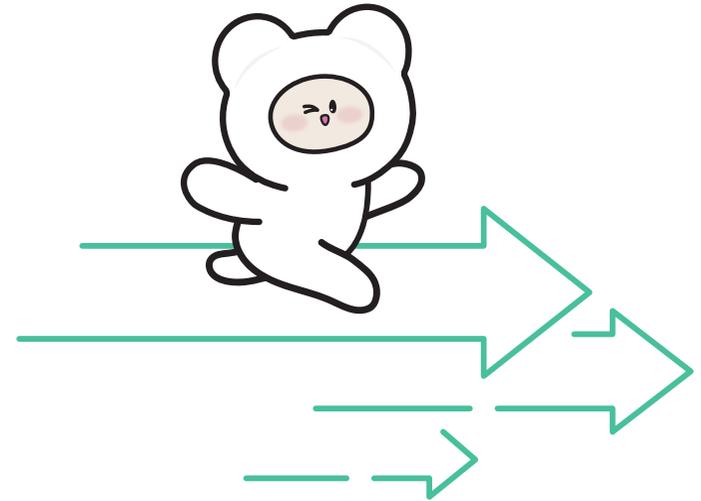
CCL(Creative Commons Licens)이 붙어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①(CC BY) 표시가 있다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출처를 꼭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원저작물의 제목, 원작자명, 출처 링크, 원저작물 CC라이선스, 변경점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란?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제도로,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CCL 기호  가
있으면 아무조건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해도 된다고요?

NO

CCL기호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지만
몇 가지 이용 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지켜야 해요!

 creative
commons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간편한 절차로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CCL은 자기 저작물을
되도록 많은 사람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싶은 저작권자를
돕기 위한 표시 방법 중 하나입니다.



CCL 이용 허락 표시 방법

4가지 '이용 허락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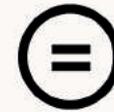
Attribution(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 조항입니다.



Noncommercial(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o Derivative Works(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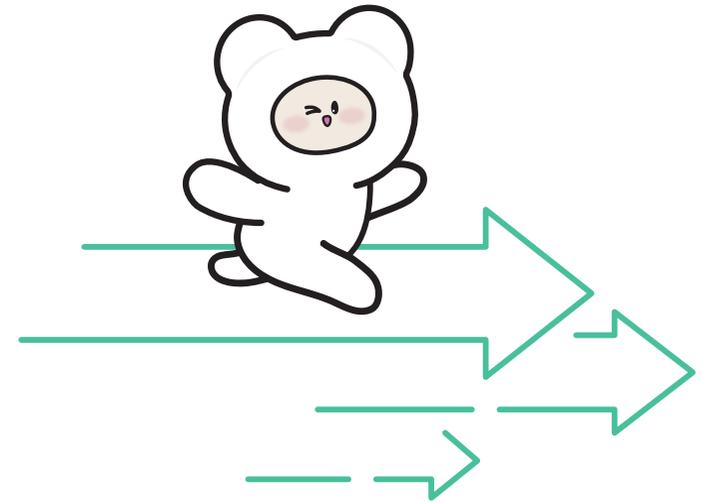
Share Alike(동일 조건 변경 허락)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CCL 이용 허락 표시 방법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저작자 표시 (CC BY)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저작자 표시-비영리 (CC BY-NC) 영리 목적으로 이용 불가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CC BY-ND)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CC BY-NC-SA) 영리적 목적 이용 불가 저작물 변경 가능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CC BY-NC-ND)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 불가 변경 불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공표된 저작물을
자료화면으로 쓰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NO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무슨 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하여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적 인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영상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료화면으로
인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분량을 이용해야하고
참고자료로서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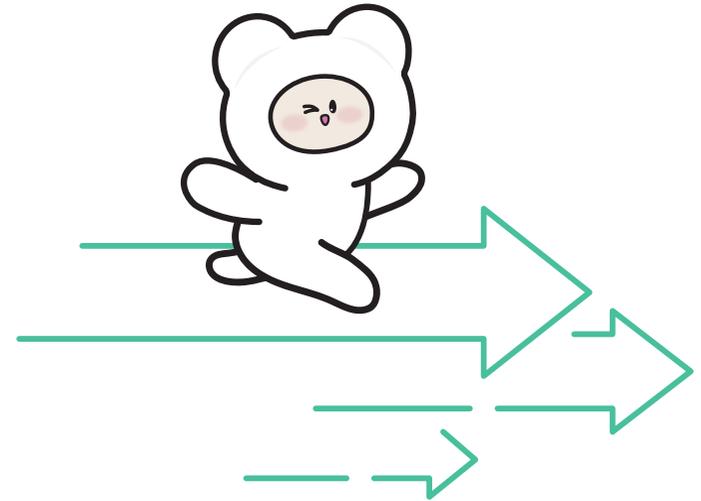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대괴수 용가리 있다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07가합18379 판결)

오락프로그램에서 특정인이 특정 영화에
출연한 적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약 3분간 방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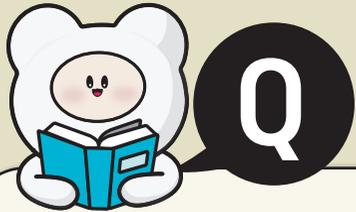
판시사항

-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임.
-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원본훼손 없는 재편집은
이용허락이 필요없다구요?

NO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재편집할 경우
원본을 훼손하지 않았다해도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다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재편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해!



재편집한 영상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YES!

저작권 침해 행위로서 민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TIP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

복제권,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



다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재편집한 경우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될까?

NO

원저작물의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이용해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편집했다면
복제권 및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새로운 창작성은 부가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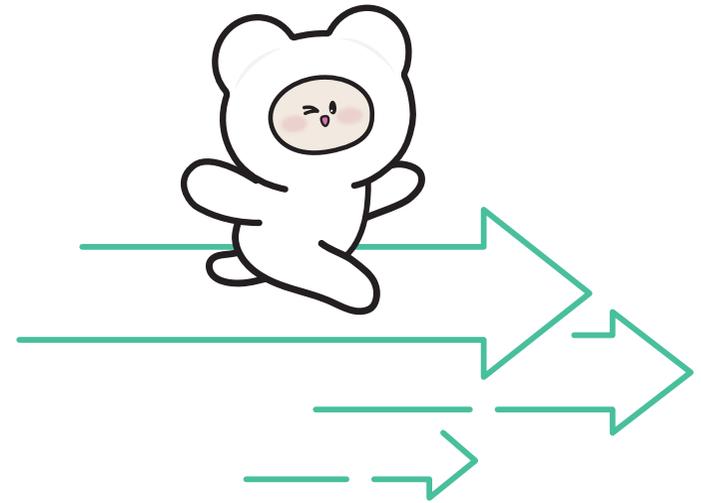


만약 재편집물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크리에이터라면 간과할 수 없는 저작권! 쇼미더디지털윤리와 함께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보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제품과 완전히 똑같은
광고용 실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YES

카탈로그에서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보호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에이터 김님

유튜버 A씨가 종로의 한 노포 빈대떡집에서 먹방영상을 맨처음 찍었다는데 나도 같은 장소에서 그런 영상을 만들려면 A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크리에이터 남짱

유튜버 B씨가 맨처음 만든 '반려견 브이로그' 영상이 인기라는데 나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 맨처음 이런 방식의 영상을 만든 B씨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저작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표현방식을 보호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창작성이 없는 표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흔한 전화번호부 사진

ABC순으로 정렬된 전화번호부는 누가 만들더라도 거의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Feist 판례).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해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햄광고 사진 역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 43366판결).



누가봐도 햄인 햄광고

햄은 어떻게 찍어도 그냥 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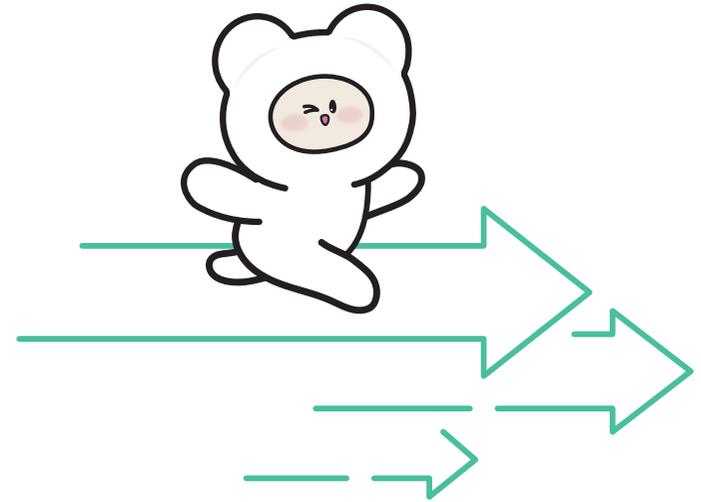
저작자사후 70년이 넘는 저작물

모짜르트나 하이든이
작곡한 곡은 자유롭게
누군가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외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례 (저작권법 7조)

- 1 한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1, 3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원숭이가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동물은 법률상 어떠한 권리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주인이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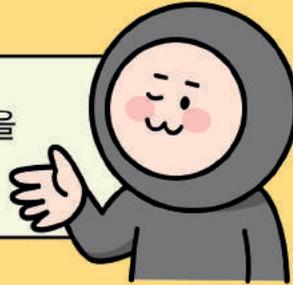
동물 저작권 관련 판결사례

원숭이가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상 인간만이 저작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인간이 아닌 원숭이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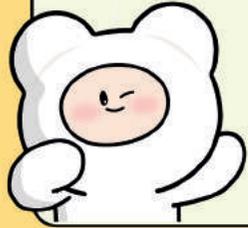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2018년 제5호, 2018. 5.18)

*자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s://www.wipo.int/wipo_magazine/en/2018/01/article_0007.html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능력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이 제작한 콘텐츠는 해당동물이 아닌 주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우리같은 동물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없느냥~!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이나오는 콘텐츠를 만들 때에는 그 주인에게 촬영목적과 이용범위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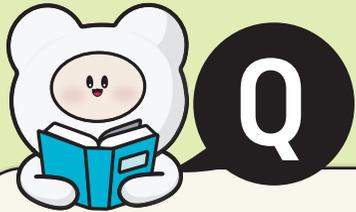
초코 (반려견)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물 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내가 적법하게 창작해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신고를 받아
차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1인 미디어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https://studio.youtube.com/>

제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어요!
도와주세요!

이의 신청을 해야해요!
함께 알아보아요!



- 1 유튜브 스튜디오의 좌측 콘텐츠 탭을 클릭하고 제한 사항에 저작권 주장을 한 콘텐츠를 클릭 후 '저작권 침해 신고 세부정보보기' 기능 확인



- 2 어떤 사용자가 저작권 소유를 주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작업 선택란에서 '이의제기'를 클릭!



내가 창작한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유권이 주장된 콘텐츠의 구간을 자르거나, 곡을 변경하고 노래를 음소거 처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수익 창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신고를 받았을 때는 관리자로부터 적절한 이용허락을 받고, 이를 소명하는 방식을 통해 플랫폼 내부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플랫폼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어요!

PART 3

인격권

크리에이터가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권!

- ❶ 인격권이란?
- ❷ 명예훼손이란?
- ❸ 개인정보침해란?
- ❹ 초상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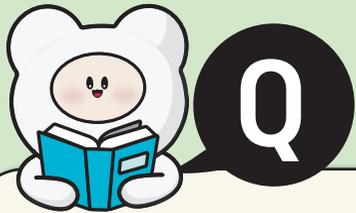
Q&A로 알아보는 인격권

- ❶ 댓글로 당한 명예훼손 해결방법
- ❷ 일부 가려진 정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 ❸ 라이브방송과 초상권
- ❹ 가족의 초상권



PART3 인격권

크리에이터가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권!



1 인격권이란?

인격권이란?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이익 즉 신체, 자유, 명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또,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10.28. 자2007헌가23 결정 등).



인격권 침해의 종류

명예훼손



- ✓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 침해



- ✓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찍어 게시하는 경우
- ✓ 동의 없이 타인의 목소리가 저장된 영상을 찍어 게시하는 경우 등

인격권 침해의 종류

초상권 침해



-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 또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하는 행위 등

혐오표현



- ✓ 특정 집단의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공개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 차별, 적의하는 표현 등
- (※ 혐오 표현에 관해 합의된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크리에이터가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권!



②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다른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인터넷에서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은 인터넷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법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합니다.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보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6. 8.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또는 거짓 사실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상태로 장래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20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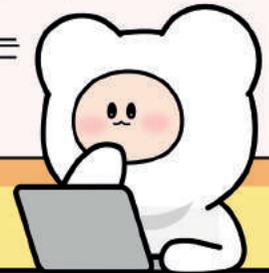
인터넷 명예훼손은 그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나 거짓이냐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크리에이터가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권!



③ 개인정보침해란?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 ☑️ 개인의 성명, 주소, 나이, 성별, 전화번호, 가족관계와 같은 신상정보

-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

- ☑️ 얼굴이 나온 사진·영상, 목소리가 저장된 녹음·영상

- ☑️ 개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이력 등 활동 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므로, 죽은 사람
'사자'에 대한 정보, 법인과 단체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야!



크리에이터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이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할 때는 사전 동의를 얻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블러 등 비식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 ☑️ 동의없이 타인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찍어 게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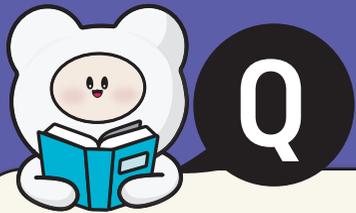
- ☑️ 동의없이 타인의 목소리가 저장된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 ☑️ 동의없이 신분증이 드러난 영상을 찍어 게시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PART3 인격권

크리에이터가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권!



4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얼굴 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권리로, 헌법 제10조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얼굴 또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 또는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유명연예인 등 공인에게만 초상권이 인정될까?

아니요!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신체의 일부만 촬영되어도 초상권 침해일까?

촬영된 영상에서 사람의 형태를 보고
자신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아닌 신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에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요.



크리에이터라면 꼭 체크해요~!



초상권에 대한 명시적 동의

초상권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방송을 한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촬영 시에는 명시적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만으로는 '초상의 사용 등을
묵시적으로 동의'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가합18555판결)

Q&A로 알아보는 인격권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아는 것은 닉네임뿐...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해결방법 있어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연락해 해결하거나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4조의2).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

삭제 요청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글을 쓴 사람을 형법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죄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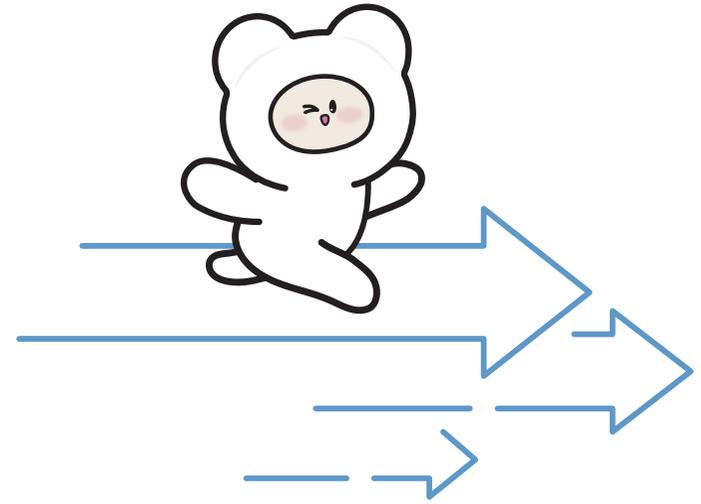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 53페이지 참조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를 하면 합의를 요구해와 합의를 해주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나중에 다시 명예훼손의 글을 올리는 등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방적으로 명예훼손 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Q&A로 알아보는 인격권



지인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리고 영상에 내보내는 건
괜찮을까요?

NO

일부가려진전화번호, 주소등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보호대상이될수있습니다.

다른정보와쉽게결합해지인이누구인지
알아낼수있다면일부가려진정보도
분명개인정보예요.



사례예시

크리에이터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공개하면서 동창을 소개하는
화면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4자리만 가린채 자막으로 달았고



해당 영상을 본 크리에이터 A씨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졸업앨범 등을 통해 영상에 등장하는 동창이 누구인지 알게되었고
그에게 계속해서 놀리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A씨가 올린 영상의 경우 졸업앨범 등을 통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으므로,
해당 영상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만약 크리에이터 A씨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부 가려진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공개를 하더라도 누구인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10-1111-2222'라는 전화번호는 '010-11**-****'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C아파트 1동 101호'는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호'로 가리는 것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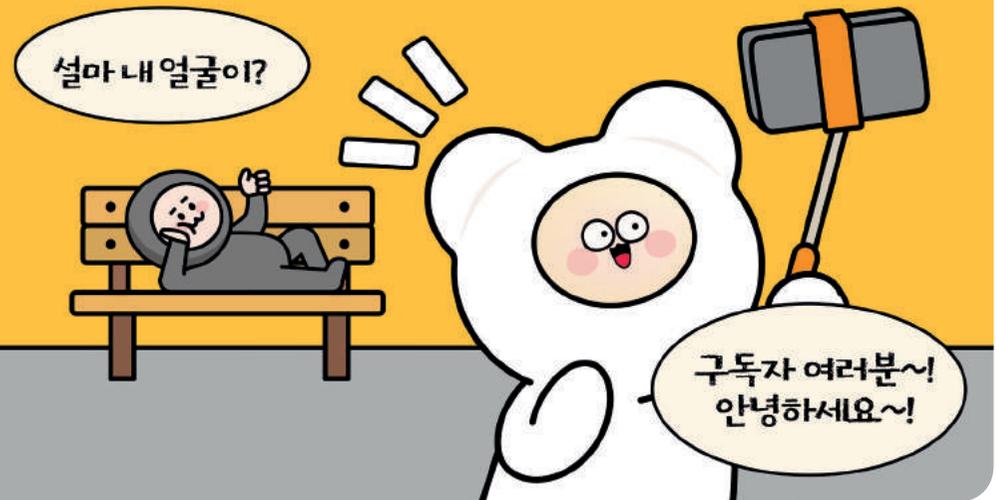
Q&A로 알아보는 인격권



라이브 방송할 때
길에 지나가는 사람 정도는
앵글에 넣어도 된다고요?

NO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야외방송 시 지나가는 행인의
경우에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돼요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뤄진 경우
- ☑ 촬영된 영상이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意的 범위를 벗어난 경우
-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공개적 장소에서 촬영 시에는 반드시 초상권 사용 승낙서와 같은 명시적 촬영 동의를 받아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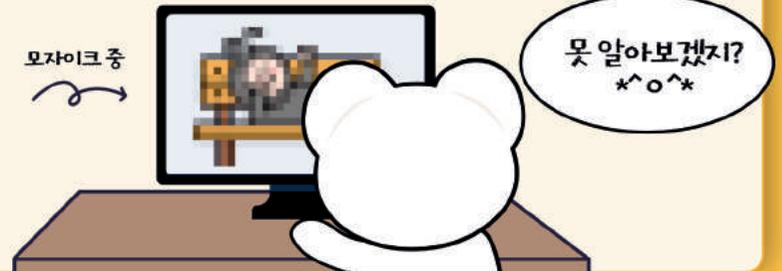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영상을 이용할 수 있어요!



초상권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았다면?

영상 편집 과정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실루엣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자이크 중



초상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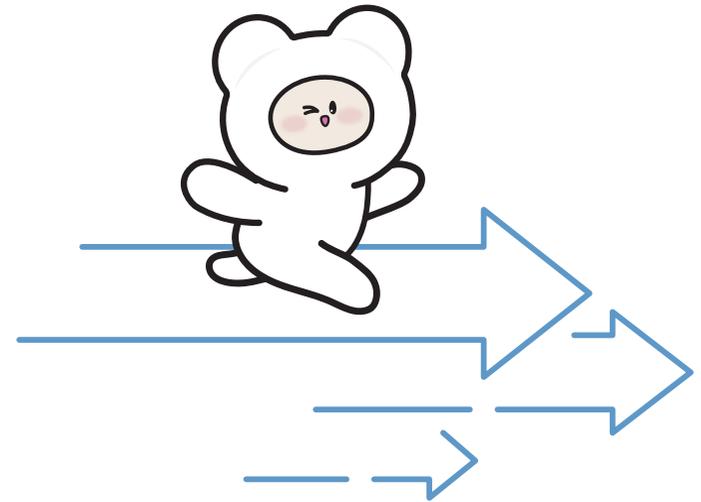
손해배상 청구가능

민법 제751조 제1항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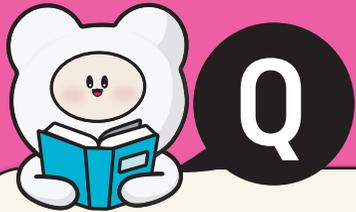
삭제 및 시정 요구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내 동의를 받지 않고 정당한 권한 없이 내 사진·영상을 게재해 나의 인격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방심위의 심의를 통해 삭제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Q&A로 알아보는
인격권



엄마가 딸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구요?

YES

가족 개인에게도 헌법상 초상권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어린이든 모든 사람은
일반적 행동 자유,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는 촬영 자체로
가족의 인격을 침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돼요!



가족 간의 촬영 또는 방송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촬영 또는 방송(공표)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하고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그과정에서 어디에 공개될 것인지 그리고 촬영
내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까지 알려주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를 출연시키는 경우 유의해야 할 초상권!



부모는 자녀를 감독하고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인
친권을 가집니다(민법 제909조, 제913조)

그러나 자녀 또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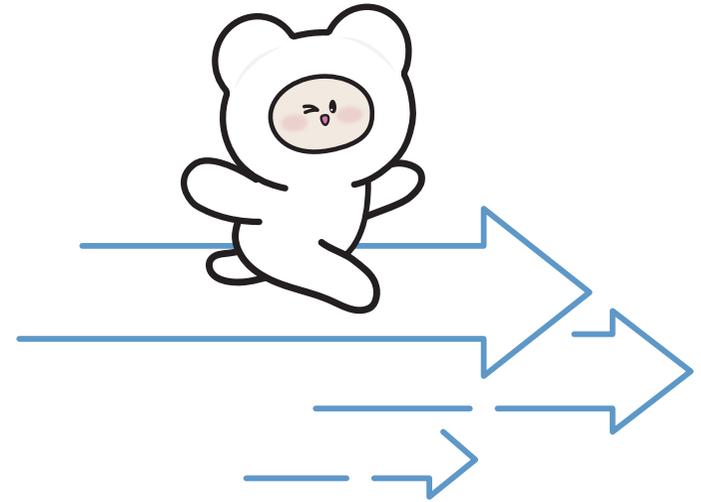


아이가 출연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억지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라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금지) 또는
제5호(정서적 학대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개개인의 '사생활의비밀과자유'는 지켜져야...!



집은 내밀한 사적 영역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영상 촬영시 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신분증, 상패 또는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만한
사진·소품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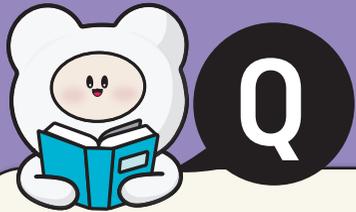
PART 4

유해콘텐츠

디지털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 ❶ 허위정보
- ❷ 청소년 유해매체물
- ❸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 ❹ 유해한 콘텐츠
- ❺ 1인 미디어 동영상의 시청 등급 기준
- ❻ 조작된 영상
- ❼ 몰카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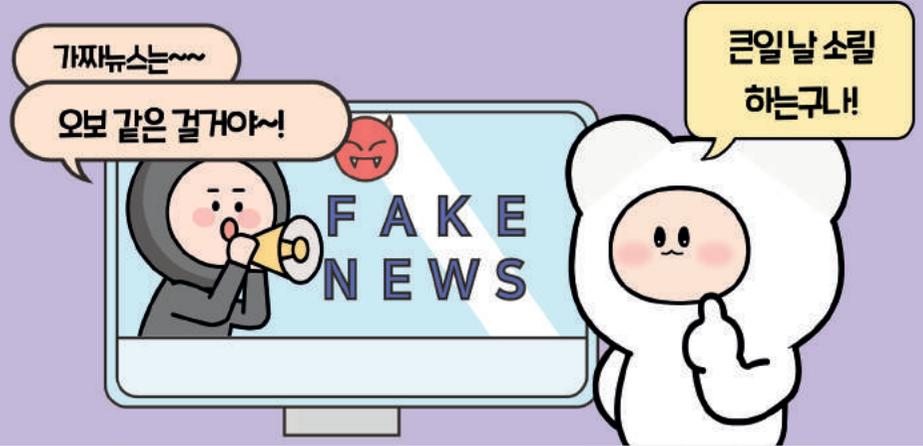
디지털 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허위 정보(가짜뉴스)는
오보와 같은 거니 받아 써도
나중에 정정만 하면 된다구요?

NO

허위정보(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마치 뉴스처럼 가장하는 기만성을 띄지만
오보는 의도성이 없다는 점에서 둘은 다릅니다.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허위정보(가짜뉴스)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허위정보(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정보(가짜뉴스)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기보다 이로 인한 피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거짓 내용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언론사를 사칭해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현행법률에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가짜뉴스)는 규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김민호, '인공지능시대와 가짜뉴스 규제 법조, 제68권제5호, p7-41, 2019

현행 법률상 모든 허위정보(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처벌하지는 않지만 그 심각성을 크리에이터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생산자 스스로가
윤리적 기준을 지고 자율규제를
강화해야해!

모든 정보를 무조건 수용하고
공유하기 이전에 정보의 출처와
작성자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관찰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비판적인 자세를 추해야 해

F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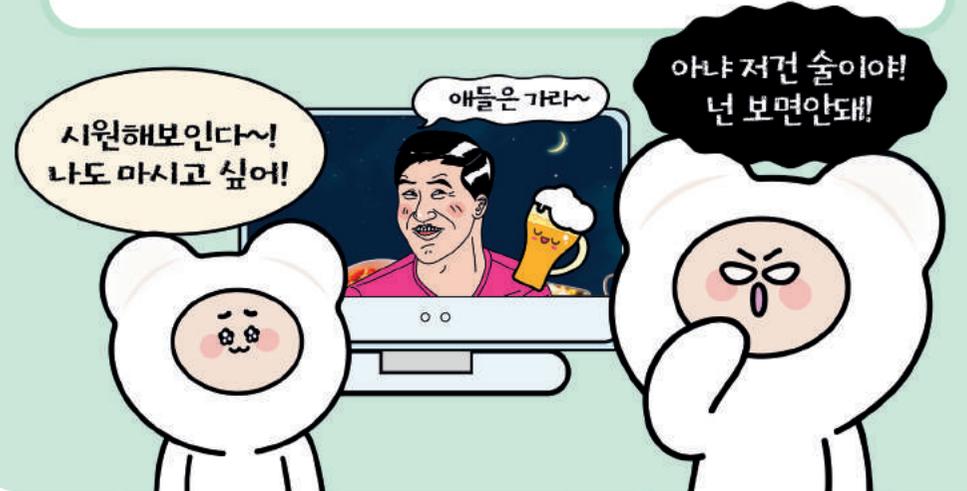
디지털 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먹방’ 만큼 유명한 ‘술방’인데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라구요?

YES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 규제 대상에 음주를
조장하는 일명 ‘술방’도 포함**되었습니다. (216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중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 1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2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

-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 약물의 남용을 자극 또는 미화하는 것
- ✔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 그리고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2항)

크리에이터는 청소년보호법 등을 잘 숙지하고 콘텐츠를 게시할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를 적절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우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시작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자막 표시를 해야 해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13조)



참고로 게임이나 웹사이트 화면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익숙한 모양이죠?



'이용자 등이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로 신고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삭제 및 시정요구를 하게 되고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업체는 자율규제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 방송 또는 채널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등이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로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및 시정요구

유튜브·인터넷 방송 업체



자율규제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 방송 또는 채널 정지 가능

디지털 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초등 4학년이 12세 이상 이용가
게임에 대해 이야기 하는
방송을 내보내면 안된다구요?

YES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이 12세 이상 이용가
게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아동 출연자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 됩니다.



게임화면 출처: 리그오브레전드 홈페이지

콘텐츠 이용자가 아동일 경우
콘텐츠의 내용과 표현이 부적절하여
삭제될 수 있는 콘텐츠 유형을
유튜브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
-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 미성년자의 정신적 고통 유발
-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이버 폭력 및 괴롭힘
- 가족용 콘텐츠를 표방하지만 성적인 주제, 폭력, 음란한 내용 등 연령 제한이 적용되는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 등

또한, 방통위의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에 따라
아동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성적 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노출 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상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되어 일하거나
광고하는 내용, 사행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 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공포에 노출 또는 욕설을
하거나 타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또는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 물건을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함.

만약 부모가 아동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면 아동에게 너무 지나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의 행동이 아동의 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명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디지털 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흡연의 원리’에 대한
정보만 전달해도
유해한 콘텐츠가 되나요?

YES

폭력·절도·음주·흡연·마약 등을 다루는 콘텐츠는
플랫폼마다 대부분 유해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크리에이터는 플랫폼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유해하고 위험할까?



위험한 콘텐츠들은 **모방심리**를 쉽게 부추기고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용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차원의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을 만큼 잠재적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각 플랫폼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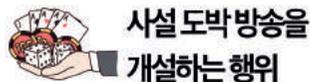
유튜브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 위급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매우 위험한 도전
- ✓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
(타인을 해치거나 죽이기 위해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
- ✓ 마약을 흡입하거나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
- ✓ 섭식 장애를 부추기는 내용
- ✓ 학교 총격 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참사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 절도 또는 속임수를 알려주는 내용
- ✓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의도로 컴퓨터나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해킹 등)을 알려주는 내용
- ✓ 요금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우회해 무단 액세스하는 방법



아프리카TV에서는 진행자(BJ)들이 다음과같은내용의 방송을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사설 도박방송을
개설하는 행위



19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이
사행성/음주/흡연 장면을
방송하는 행위



19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방송하는 행위(게임 포함)

특히 불법적으로 사설 도박 방송을 개설하게 되면 영구정지 조치와
함께 해당 아이디의 개인 신상정보를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 자동으로
인계하며 국민체육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위험한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을 세심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한 콘텐츠의 유혹
크리에이터라면 뿌리칠 수 있어야해!

1인 미디어는 수익창출의 도구? **NO**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사고방식 **NO**

안전하고 건강한 1인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
크리에이터 각자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용자도 위험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고 더 이상 시청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방송이나 영화와 달리
1인 미디어 동영상은
시청 등급 기준이 없나요?

YES

방송 프로그램을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 중 하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1인 미디어 동영상은 제도적으로 시청 등급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크리에이터의 자체적인
기준 정립과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해요!



1인미디어 동영상 이용 중 유해한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해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바로 시청을 중단하고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센스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해당 영상에 대해 보호자와 이야기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폭언과 폭력적인 정도가 심한 동영상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해요!

신고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1 해당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 신고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해당 영상 하단의 탭에서 신고 차단 가능

영상 하단의 탭 우측에 있는 ...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박스에서 모양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YouTube



아프리카TV는 고객센터 '신고하기'에서 신고 가능

afreecaTV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불법·유해정보 신고란을
통해 신고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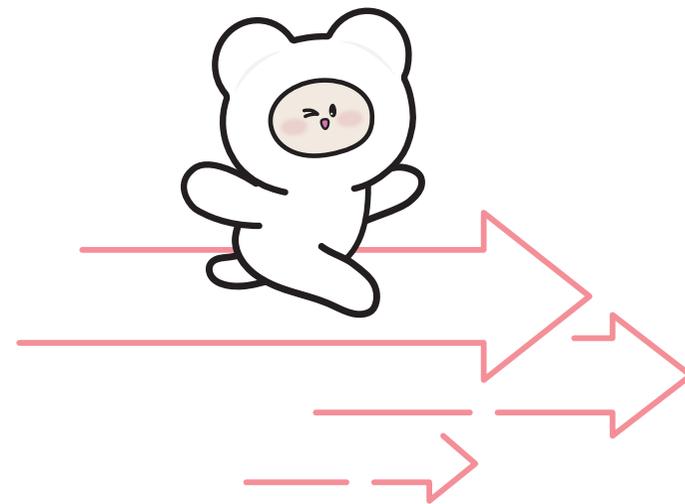
<http://www.kocsc.or.kr/>



3 경찰청의 사이버 신고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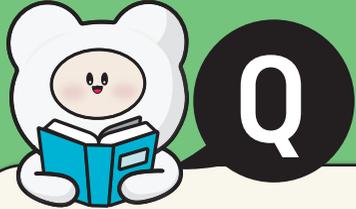
폭언과 폭력적인 내용 등
불법콘텐츠 범죄 신고가능

<https://ecrm.police.go.kr/>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디지털 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더 많은 별풍선과 슈퍼챗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가공'은 필수라구요?

NO

이용자의 관심만 받으면 돈을 버는 콘텐츠 보상체계로 인해
크리에이터들은 자극적인 주제에 중독되곤 합니다.
하지만 자극을 위해 콘텐츠를 조작한다면 시청자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해요!



구독자 확보에만 치중하는 크리에이터의 문제점

'사이버 렉카'라는 신조어를 알아볼까요?

사이버 렉카란 이슈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유튜버를 말해! 이들에게 사건이나 이슈와 관련된 피해자의 고통이나 거짓이 불러올 파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것은 아니되오!

그들이
몰려온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

2020년 5월에는 모 국립대 수의학과생 2명이 구조한 유기동물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설 만큼 큰 인기를 끌던 '○○목장' 운영이 거짓임이 드러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어!



헉~! 너무 감동적이어서 슈퍼챗까지 보냈는데!

사실과는 달리 채널에 등장한 동물을 펫숍에서 구매했고 촬영에 적합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동물에 대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



속았다!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조작된 영상을 올릴 경우 다음 사례들과 같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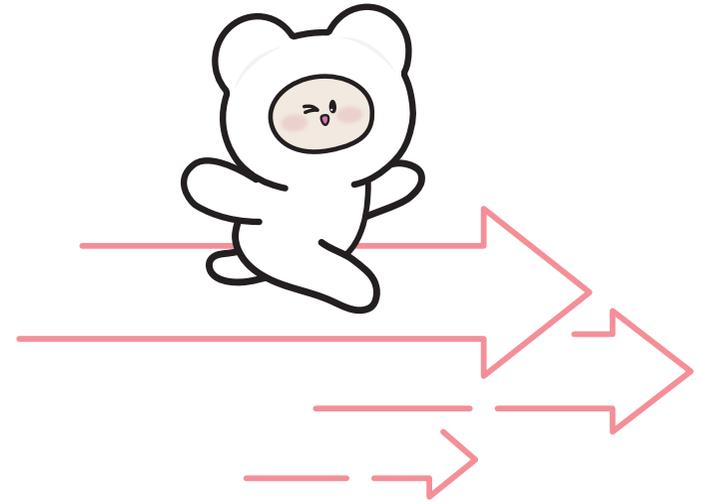
특정 업체가 배달 과정에서 음식을 빼돌렸다고 조작한 영상을 올릴 경우

거짓 영상으로 해당 업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중교통에서 자신을 감염자라고 소리치며 이를 촬영해 콘텐츠로 제작한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음(2020고단495 판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디지털 윤리
역량은 필수!
유해한 콘텐츠를
피하는 방법



장난으로 촬영한 '몰카'도
인격권 침해가 되나요?

YES

콘텐츠를 위해 일반인의 리액션 몰래카메라 영상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이후 반드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과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것을 알려야해!
물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촬영동의도 얻어야 하지!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 영상은 폐기해야해!

다들 장난으로 촬영한
영상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헉~ 장난이 장난이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해

웃자고 한 것에
심각해지면 곤란해~



ㅋㅋ
ㅋㅋ



너 위험해!!

허락을 받지 않은 '몰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촬영하고 게시까지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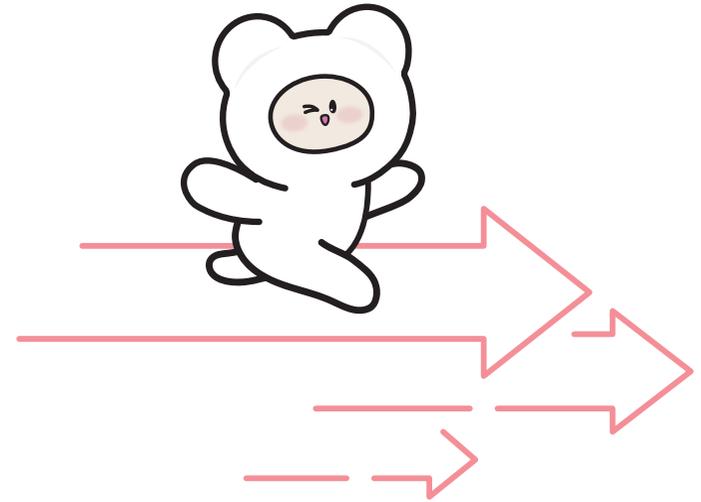
- 초상권 침해 해당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해당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몰래카메라 영상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 16조 제1항 제1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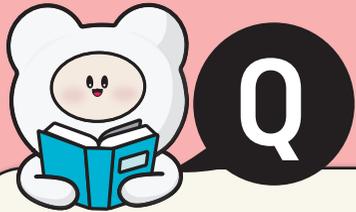
PART 5

광고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광고윤리

- ① 허위 광고의 유혹 ①
- ② 허위 광고의 유혹 ②
- ③ '내돈내산' 콘텐츠 주의사항
- ④ 뒷광고 표기방법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광고윤리



< 언박싱 크리에이터 A씨의 사례로 알아보는 >
크리에이터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허위 광고의 유혹 ①

언박싱 크리에이터 A씨는 가끔은 개봉만 하고 사용은 해보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짧은 소개 영상을 올리곤 합니다.



살짝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만
‘협찬을 받았으니 반드시 알린다’를 나름의
자기 합리화 기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협찬을 받고 업로드한
어떤 화장품 후기영상 때문에
허위광고 논란을 겪고 있어요.



해당 화장품을 쓰고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제품 홍보를 한 유튜버들을
찾아내서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방송 화면을 캡처해봤는데
저 화장품 용기에 크림이 하나도
줄지 않은 상태지 뭐예요?



얼굴에 수포 올라옴~
책임지삼 책임지삼~!!
피부 다 뒤집어짐ㅠㅠ



'내돈내산'이라면서요!
유튜버님 사실대로 말해요!
뒷광고 하신거죠?



XXX 발랐다가
저 요즘 피부과 다녀요ㅠㅠ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어요



제 생각엔 한 번도 안바르고
영상만 올리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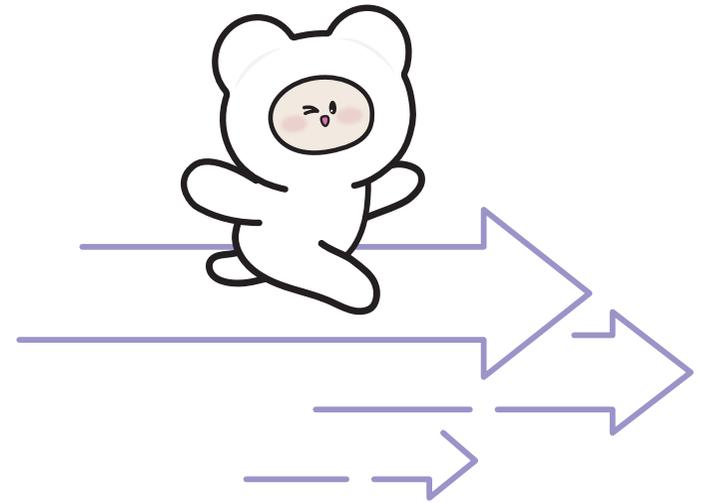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데!!
유튜버님은 관찮으신 거예요?

하필 문제의 화장품 후기 영상에
'내돈내산'이라는 자막을 넣은 것도
뒤늦게 발견한 A씨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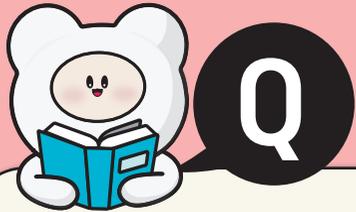
**A씨의 사례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크리에이터 A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광고윤리를
위반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광고윤리



< 언박싱 크리에이터 A씨의 사례로 알아보는 >
**크리에이터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허위 광고의 유혹 ②**

개봉만하고 사용해보지 않은 협찬제품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크리에이터 A씨 괜찮을까요?



NO

상품이나 서비스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의
추천·보증 내용은 반드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야 해요!



괜찮지 않아요!!

즉 크리에이터 A씨는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광고를 했으므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위반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어!

크리에이터 A씨는 협찬받은 제품을
손등에 살짝 발라보고 가려운 느낌을 받았지만
리뷰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괜찮을까요?



NO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위한 판단에
필요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관찰지 않아요!!

가려운 느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어!

협찬받은 화장품의 리뷰영상에
'내돈내산'이라는 자막을 넣은
크리에이터 A씨 관찰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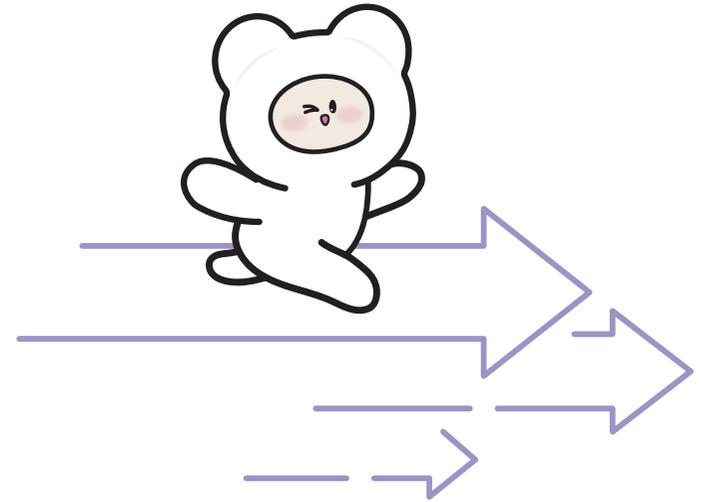
NO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제품을 추천하거나 그 성능 등을 보증한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해!



관찰지 않아요!!

즉 내돈내산이 아닌데 그렇다고 했으므로
추천보증심사지침위반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광고윤리



**‘내돈내산’ 리뷰 방송에서
대가 없는 특정 브랜드 노출은
문제가 안된다고요?**

NO

대가성과 관련 없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사용 방법에 따라
그 브랜드의 상표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호의로 시작한 광고라 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내돈 내산’이라고
안심하다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돈내산’ 리뷰를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유명브랜드를
콘텐츠에 노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소품, 패션, DIY, 공작, 패러디 등의 콘텐츠에서 등록권리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카피제품을 만들어
판매 또는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해당 브랜드를 식별할 만한 도형, 색채 조합 등의 표지를
로고나 콘텐츠 디자인에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ex 아디다스의 세줄 무늬 디자인)



브랜드의 상표등록 여부는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D



또한 브랜드가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가공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

다음과같은 광고를 하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해!

-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 과장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광고
- 비교대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광고

표시광고법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내돈내산’ 등 브랜드 리뷰를 하면서 높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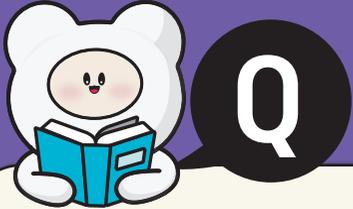
비난 수위에 따라서 해당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비방할 목적으로
브랜드를 흑평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쇼미더디지털윤리와 함께하는
크리에이터는 그런 리뷰를
하지 않을거야!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광고윤리



업체에서 홍보비를
1원이라도 받았으면
무조건 알려야 한다구요?

YES

업체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아무리 소액이라도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업체에서 홍보비용을 받고
'내돈내산'처럼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관찰을까?

질문이얌~!



아냐~! 협찬 사실은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해!

헉! 큰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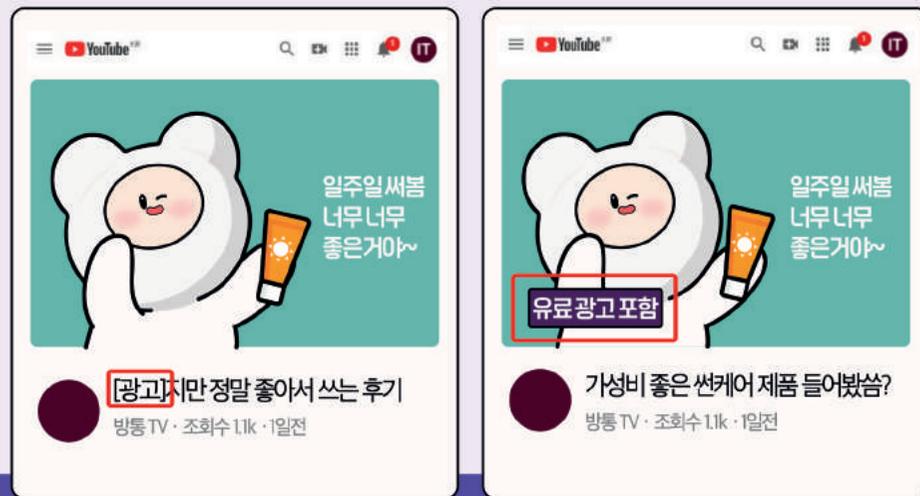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받고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여 올릴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야해!**

-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
-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의 사실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

YES 영상제작시 올바른 표기의 예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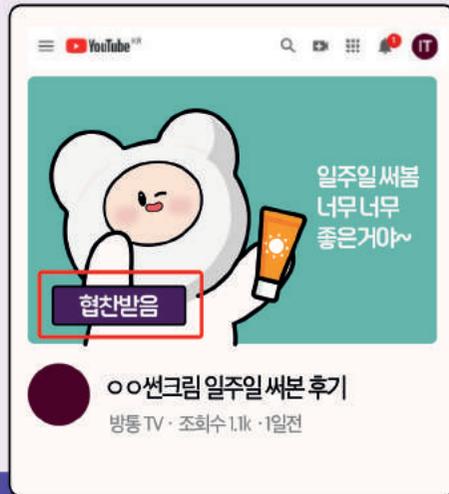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경우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라고 입력하거나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해야해!

YES 영상제작시 올바른 표기의 예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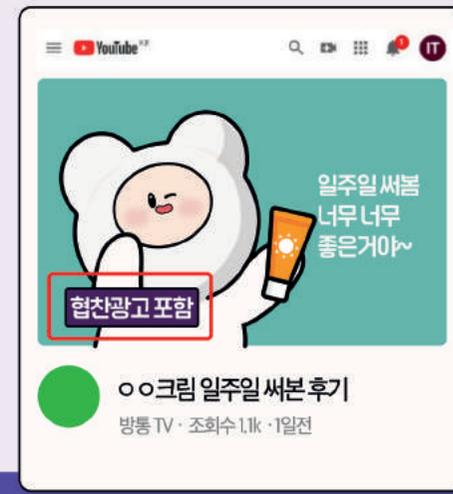
별도대가없이단순히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해!

YES 영상제작시 올바른 표기의 예시 ③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 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이 포함된 경우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해야해!

다음은 잘못된 표기의 예시야! 실수할 수 있으니 확실히 알아보자!

혹시 실수로
잘못 표기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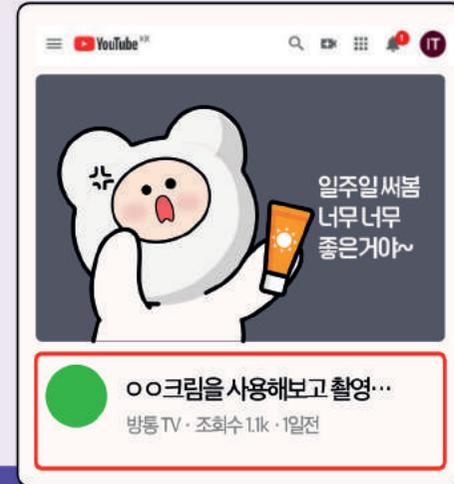
협찬받은 내용을
표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이
표기하면 안돼요!



NO 잘못된 표기의 예시 ①

제목은 길게 입력해 모바일 화면에서는 협찬받았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제목에서 협찬받았다는 내용이 잘 보이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해!

NO 잘못된 표기의 예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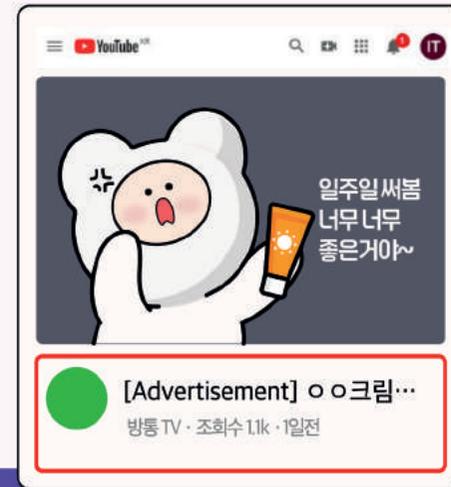
영상의 설명란, 고정 댓글에만
광고 협찬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제목, 영상 내 자막이나 배너를 통해
광고 협찬 내용을 적절하게 표시해야해!

NO 잘못된 표기의 예시 ③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 보증을 하면서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 '파트너십',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엠버서더' 등으로 협찬 사실을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문의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02-2110-1522